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 가 유 산 수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법 개정('25.11.11.공포, '26.11.1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수리 수행 자격을 완화 적용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금액 기준을 규정된 이후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기준 개수 산정,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사무실 보유요건 등 현장 적용에서 혼동이 발생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9. ~ 2026. 8. 18.)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1억원”을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지원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2. 가입대상: 실측설계, 국가유산수리, 감리 및 보존처리계획
3. 가입금액: 제2호의 계약금액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현장”을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7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

가. 사무실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용도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출 수 있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6. 1.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2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라. 법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3	100		
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사.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자. 법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	50		
차. 법 제5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3	100	150	200

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하.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 (생략)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u>1억원</u>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국가유산수리 3. 종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u>2천만원</u>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u><신설></u>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1억 5천만원</u> ----- ----- ----- ----- 3. ----- -- <u>3천만원</u> ----- -- <u>제18조의4(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등을 위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지원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2. 가입대상: 실측설계, 국가유산수리, 감리 및 보존처리계획

3. 가입금액: 제2호의 계약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은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군에서 국가유산수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이를 1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 ⑥ (생략)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966